

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5호 서식 중 앞쪽의 “㉑기술자격사항, ㉒선임·해임일, ㉓구분”을 “㉑휴대전화 번호, ㉒기술자격사항, ㉓선임·해임일, ㉔구분” 으로 하고, 뒤쪽에 “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·활용 동의서” 내용 기재 및 작성방법의 5. ㉑을 5. ㉔로 한다.

별지 제16호 서식 중 앞쪽의 “전기안전관리자, ㉑성명, ㉒휴대전화번호” 란을 신설하고, 뒤쪽에 “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·활용 동의서” 내용을 기재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전기안전관리자 [] 선임 [] 해임 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3일	
①업체 코드				
신고인	(상주) [] 전기사업자 []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·점유자	② 법인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③ 회사명 또는 상호	
		④ 주소		
		⑤ 대표자 성명	⑥ 전화번호	
	(위탁사업자) [] 전기안전관리전문 [] 시설물관리전문	⑦ 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⑧ 회사명 또는 상호	
		⑨ 주소		
		⑩ 대표자 성명	⑪ 전화번호	
전기설비	⑫ 설치장소의 주소			
	⑬ 수전설비	용 량	kW 전 압 V	
		계약종별	사용개시일	
	⑭ 발전설비	상 용	kW 전 압 V	
		비 상 용	kW 전 압 V	
		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	태양에너지	kW 전 압 V
			연료전지	kW 전 압 V
			기타()	kW 전 압 V
	⑮ 그 밖의 설비 (심야·휴지설비 등)	용 량	kW 전 압 V	
		용 도	휴지기간	
전기안전 관리자	⑯ 선임·해임 구분	⑰ 성명	⑱ 주민등록번호	
	⑲ 휴대전화 번호	⑳ 기술자격사항	㉑ 선임·해임일	
			㉒ 구 분	

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자의
[] 선임 [] 해임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전력기술인단체 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

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·활용 동의서

1.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개인정보 등을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리, 안정적인 전력공급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 2.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「전기사업법」 제6조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리, 안정적인 전력공급 등 공공의 이익과 안전확보 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기관 및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.
- ※ 위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·활용 동의는 전기안전관리자 해임시까지 유효하며(선임신고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),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자 해임 후에도 전기설비 이력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·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※ 위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·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.

신고인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전기안전관리자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첨부 서류	1. 선임신고 가.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1부 나.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재직증명서와 실무경력증명서(해당자만 첨부합니다) 또는 그 증명서류 1부 다.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졸업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(「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8조에 해당하는 자만 첨부합니다) 1부 라. 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(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자만 첨부합니다) 1부	수수료
	2. 해임신고: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사본(후임자의 선임 없이 해임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) 1부	없음

작성방법

1.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②란부터 ⑥란까지 적고,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②란부터 ⑩란까지 적습니다.
2. ②란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고,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3. ⑦란은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등록번호를 적고, 시설물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4. ⑮란은 심야전력, 휴지설비 등을 적으며, 용도란은 계³절용, 농사용, 심야용 등으로 적습니다.
5. ㉔란은 분야별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으로 적습니다.

전기안전관리자 []선임 []해임 신고서

([]안전공사 []대행사업자 []개인대행사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3일	
① 업체코드				
신고인	② 법인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③ 회사명 또는 상호		
	④ 주소			
	⑤ 대표자 성명	⑥ 전화번호		
전기설비	⑦ 설치장소의 주소			
	⑧ 수전설비	용 량	kW 전 압	V
		계약종별		사용개시일
	⑨ 발전설비	상 용	kW 전 압	V
		비 상 용	kW 전 압	V
		태양에너지	kW 전 압	V
		기타()	kW 전 압	V
	⑩ 그 밖의 설비 (심야·휴지설비 등)	용 량	kW 전 압	V
용 도		휴지기간		
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 는 자	⑪ 등록번호	⑫ 전화번호		
	⑬ 회사명 또는 상호	⑭ 대표자성명		
	⑮ 주소	⑯ 선·해임일		
전기안전 관리자	⑰ 성명	⑱ 휴대전화 번호		

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자의
[]선임 []해임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전력기술인단체 귀하

첨부서류	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(선임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	수수료 없 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

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·활용 동의서

1.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개인정보 등을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리, 안정적인 전력공급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 2.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「전기사업법」 제6조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리, 안정적인 전력공급 등 공공의 이익과 안전확보 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기관 및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.
- ※ 위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·활용 동의는 전기안전관리자 해임시까지 유효하며(선임신고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),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자 해임 후에도 전기설비 이력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·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※ 위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·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.

신고인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전기안전관리자 성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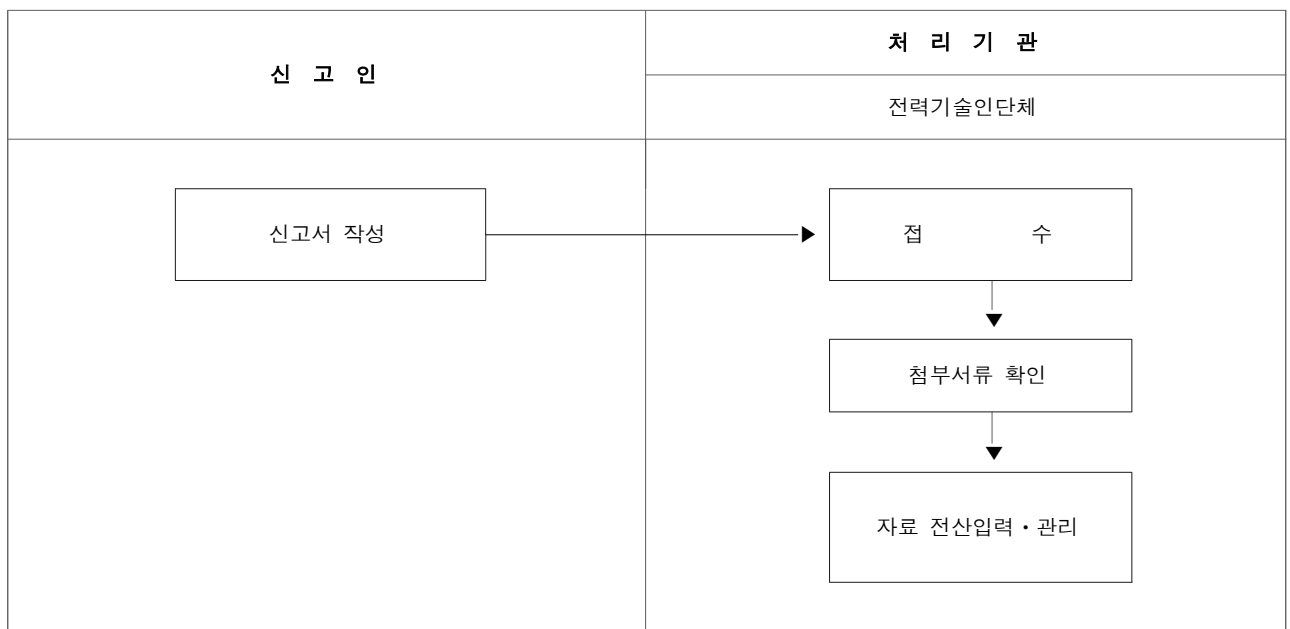
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1. ②란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고,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2. ⑩란은 심야전력, 휴지설비 등을 적으며, 용도난은 계절용, 농사용, 심야용 등으로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	
연 락 처	(044) 203 - 3932